

林業協同組合이 設立된다

崔秉勳 / 山林廳 林政課長

'90年 3月부터 推進해온 山林組合法 改正案이 지난 5月 18日 國會本會議를 通過, 6月 11日 公布되므로써 200萬 山主를 비롯하여 全林業人の 오랜宿願인 林業協同組合을 드디어 設立하게 되었다.

1. 協同組合體制로 改編

○現在 山林組合은 山林綠化와 山林保護를 目的으로 山主와 現地住民을 動員하여 組織된 山林契를 構成員으로 하는 組織形態로 運營되어 왔으나

○이제는 山林綠化가 完成되어 山林經營에 力點을 두어야 할 段階에 있으므로 山林도 하나의 產業으로 育成되어야 하나, 林業의 長期性 및 低收益性에 의한 投資忌避와 特히 都市化 · 產業化에 따른 農山村의 空洞化現象과 繼續되는 人力難 및 現實 勞賃上昇으로 效率的인 山林經營을 期待할 수 없는 實情에 있다.

○따라서 山林組合의 組織을 山主와 山林經營者를 構成員으로 하는 協同組合體制로 改編하여 組合員의 自律的인 協同을 통한 山地資源化를 早期에 實現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하는 한편, 組合員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向上과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하려는 것이다.

2. 主要骨子

○組合의 名稱과 組織

現行 山林組合法은 林業協同組合法으로 그 題名을 變更하고 山林組合은 林業協同組合, 山林組合中央會는 林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하며 組織體系도 山林契 · 組合 · 中央會 2段階로 하고 現 山林契는 앞으로 自律解散時까지 存續한다.

○組合員의 構成

現 山林組合은 山林所有者와 現地住民으로 構成된 山林契와 山林關係事業經營者로 構成되었으나 林業協同組合은 協同力의 強化와 效率的인 事業遂行을 위하여 組合區域안에 所在하는 山林의 所有者로서 그 領域안에 居住하는 者와 그 領域의 山林經營者를 組合員으로 하며, 現 山林契員은 山林契가 解散되는 날까지 林業協同組合의 組合員이 된다.

○事業의 擴大

林業協同組合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現行와 같이 林業技術指導, 造林, 育林, 山林保護, 林道施設 등 山林施策事業을遂行하는 것 이외에 公益事業으로서 休養林 山林博物館, 樹木園, 狩獵場의 造成과 그 施設의 設置, 管理를 追加하는 한편, 組合員 또는 會員을 위한 販賣事業, 利用事業, 相互金融業務등 經濟事業을遂行한다.

○出資制度의 導入

林業協同組合 및 中央會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 또는 會員으로 하여금 出資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出資와 關聯한 出資持分의 讓渡, 持分還給請求權 剩餘金의 配當, 回轉出資 등에 관하여는 앞으로 定款으로 定하게 된다.

○任員 및 幹部職員의 責任

- 山林組合의 常務理事制度를 廢止하고 幹部職員으로 專務 1人과 定款이 定하는 數의 常務를 두며 專務 및 常務는 中央會長이 實施하는 銓衡試驗에 合格한者 중에서 組合長이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任命한다.
- 組合의 任員은 民法 第35條 法人の 理事 등의 損害賠償責任을, 幹部職員은 商法上 支配人の 責任에 관한 規定을 準用토록 하므로써 그 責任을 明定한 것이다.

3. 林業協同組合法의 施行

林業協同組合法이 6月 11日 公布되고,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하게 되므로 앞으로 施行令制度, 定款改正등 必要한 事項을 準備하여 내년初에 施行하게 될 것이다.

4. 期待效果

○이번 山林組合法改正은 題名이 變更되는 등 그 内容으로 보아 事實上 林業協同組合法이 制定된 것이며, 앞으로 우리 林政史에 길이 남을 林業協同組合이 새로이 誕生한 것이다.

○이제 山主와 山林經營者 中心의 林業協同組合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 나므로써

첫째, 構成員의 同質性 回復으로 相扶相助精神의 高揚과 連帶參與意識이 提高되고

둘째, 林業基盤造成을 為한 協同組合運動의 展開로 山主와 山林經營者 中心의 協同力이 強化되며

셋째, 購買事業의 定着과 利用事業의 活性化로 所得이 增大되고 流通構造의 劇期的改善으로 經濟的 利益이 增進되고

넷째, 組合員相互金融體制 確立으로 林業金融 및 家計資金의 安定的 供給과 農山村經濟活性화에 奇與할 것이며

다섯째, 山林經營意慾의 提高로 山地資源化의 早期實現과 組合의 自立基盤構築에 크게 奇與할 것이다.★